

#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 및 사업주체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대상자(배정세대)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아울러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어 공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 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 위 치 : [2단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일원  
[3단지] 용인시 처인구 남동 243 일원
- 공 급 규 모 : [2단지] 아파트 지하 3층, 최고 28층, 13개동, 총 1,804세대  
[3단지] 아파트 지하 4층, 최고 26층, 3개동, 총 239세대
- 공 급 세 대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공급 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2단지]	59.9756A	59A	59.9756	20.2313	80.2069	4.2323	84.4391	609
	59.9825B	59B	59.9825	19.9242	79.9067	4.2327	84.1394	318
	84.9993A	84A	84.9993	27.1766	112.1759	5.9981	118.1740	446
	84.9942B	84B	84.9942	26.8632	111.8574	5.9977	117.8551	409
	84.9901C	84C	84.9901	27.0664	112.0565	5.9974	118.0540	22
[3단지]	84.9993A	84A	84.9993	28.3733	113.3726	14.4467	127.8192	135
	84.9942B	84B	84.9942	28.0598	113.0540	14.4458	127.4998	42
	84.9901C	84C	84.9901	28.2630	113.2531	14.4451	127.6982	62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기관추천(인천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세대수	
			배정세대	예비 대상자(500%)
[2단지]	59.9756A	59A	4	20
	59.9825B	59B	2	10
	84.9993A	84A	3	15
	84.9942B	84B	3	15
	84.9901C	84C	-	-
	합계		12	60
[3단지]	84.9993A	84A	1	5
	84.9942B	84B	-	-
	84.9901C	84C	-	-
	합계		1	5

##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2단지]	[3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	'25.03.21.(금)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www.prugio.com/hb/2025/onecluster/)
건본주택 오픈	'25.03.28.(금) 예정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건본주택 2,3단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청약 원칙]	'25.03.31.(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5.04.08.(화) 예정	'25.04.09.(수)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⑤ 토스, ⑥ 신한인증서, ⑦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 신청자격

### ■ 기본요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확정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 및 통보된 분
  - 확정 대상자(배정세대)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p><b>무주택 요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2조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p><b>당첨자 선정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 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ul>																				
<p><b>청약 자격요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li> <li>▪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table border="1" data-bbox="282 1021 1246 1239"> <thead> <tr> <th>구분</th> <th>용인시 및 경기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li> </ul> </li> </ul>	구분	용인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용인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IV 유의사항 안내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통보한 세부사항(주택형 등)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자격사항 검색 또는 확인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구성원과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홈페이지(www.prugio.com/hb/2025/onecluster/)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분양사무소☎ 031)282-2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